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15.12.31.>

(앞쪽)

제 호

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

사 진

3㎝ × 4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
성 명

기 관 명

55㎜×80㎜[백상지(150g/㎡)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소 속: _____

직 위: _____

성 명: _____

생년월일: _____

위 자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6항에 따른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.

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
년 월 일까지

기 관 장 명 의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